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4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04일

발 의 자: 허 · 훈 의원(1명)

찬 성 자: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문성호, 박상혁, 박춘선,
봉양순, 서상열, 옥재은,
윤종복, 장태용, 채수지,
황철규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드시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진단 비용을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9조제2항 중 “하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를 “한다.”로 함.

나. 제9조제3항 중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을 “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로 함.

다. 제9조제4항 중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를 “안전진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로 함.

라.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제89조에 따른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하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을 “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를 “안전진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제89조에 따른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생략)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② ----- ----- ----- ----- ----- ----- -----한다.
③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u>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u>
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 ----- -----안 전진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

<신 설>

⑤ (생 략)

청한 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제89조에 따른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문 서 번 호

202207280000000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 청 인 : 허훈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 수 일 : 2022.07.28

회 신 일 : 2022.08.01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⑤ 시장은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제89조에 따른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은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제89조에 따른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5

e-mail : kjh0123@seoul.go.kr